

의안번호	제 827 호
의 결 연 월 일	2021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육미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8월 25일

#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육미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2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8월 25일

발 의 자 : 육미선, 임영은, 이옥규,  
박상돈, 심기보, 오영탁,  
송미애

## 1. 개정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상위법인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 
에 따른 조문 변경(2021.8.17. 개정, 2022.2.18. 시행)
  -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→ 제17조의5(안  
제10조제3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  - 아니한 → 았은(안 제2조)
  - 조속히 → 빠른 시일 내에(안 제3조)
  - 자 → 사람, 호선한다 → 선출한다, 1회에 한하여 → 한차례만  
(안 제5조)
  - 예산의 범위 안에서 → 예산의 범위에서(안 제11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,  
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##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조속히”를 “빠른 시일 내에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 등)”을 “(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”를 “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담당국장”을 “담당 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“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 협의회”업무 담당”을 ““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” 업무 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지원 분야”를 “지원분야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담당국장”을 “담당 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소관업무 담당사무관”을 “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개의”를 “개의(開議)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”을 “제17조의5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을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조(정의) (생략)</b></p> <p>1.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북한에 주소·직계가족·배우자·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<u>아니한</u> 자를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<b>제3조(충청북도지사 등의 책무)</b></p> <p>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<u>조속히</u> 정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<b>제5조(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 등) ①</b>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<u>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</u>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<b>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1.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북한에 주소·직계가족·배우자·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<u>않은</u> 자를 말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3조(충청북도지사 등의 책무)</b></p> <p>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<u>빠른 시일 내에</u> 정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5조(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 등) ①</b>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<u>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</u>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(생략)</p> <p>1.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<u>담당국장</u></p> <p>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45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시·군에 구성된 “<u>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 협의회</u>”업무담당 <u>부서장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지방경찰청,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<u>자</u></p> <p>5.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</p> <p>③ 위원장은 <u>담당국장</u>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<u>담당 국장</u></p> <p>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45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시·군에 구성된 “<u>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</u>” 업무 담당 <u>부서장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지방경찰청,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<u>사람</u></p> <p>5.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사람</u></p> <p>③ 위원장은 <u>담당 국장</u>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한 차례만</u> 연임할 수</p>

현행	개정안
<p>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
<p>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	<p>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<u>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</u>으로 한다.</p>
<p>제8조(회의) ① (생략)</p>	<p>제8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</u>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(開議)</u>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수당 등)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<u>대하여는</u>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수당 등)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<u>대해서는</u>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10조(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10조(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도지사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</p>	<p>③ 도지사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<u>제17조의5</u>에 따른 북한이탈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1조(업무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·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업무의 위임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·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행한다.</p>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7조의5(우선 구매 등)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9. 1. 15.]

제17조의5(우선 구매 등)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

②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1. 8. 17.]

[시행일 : 2022. 2. 18.] 제17조의5

### □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5조의5(우선 구매) ① 법 제17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(이하 “모범사업주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. <개정 2019. 7. 16., 2021. 5. 25.>

1. 연간 평균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
2.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

- ②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모범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1. 5. 25.>
- ③ 통일부장관은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 <개정 2021. 5. 25.>
-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21. 5. 25.>

[전문개정 2010. 9. 27.]

[제34조의3에서 이동 <2019. 7. 16.>]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### 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